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7882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4442호	서지영의원	2024.9.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1977호	김민전의원	2025.8.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6272호	박성준의원	2026.1.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2.19.)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3. 10.)는 이상 3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 략)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 11. (생 략) ②·③ (생 략)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8.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